|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658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하는 바이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5년 1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정부조달법 제2조에서의 재정자금이라 함은 예산관리에 편입시킨 자금을 지칭한다.  재정자금을 상환 자금원으로 하는 대출자금은 재정자금으로 간주한다.  국가기관, 사업기관 및 단체조직의 조달 프로젝트에 재정자금과 비재정자금이 사용되는 경우 재정자금으로 조달하는 부분은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를 적용받으며; 재정자금과 비재정자금을 구분하여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를 일괄 적용받는다.  정부조달법 제2조에서의 서비스에는 정부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부가 사회대중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집중조달목록에는 집중조달기구 조달 프로젝트와 부서 집중조달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기술, 서비스 등 기준이 통일화 되었고 조달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집중조달기구 조달 프로젝트에 편입시키고; 구매자 본 부서, 본 시스템의 업무 수요에 기초한 특수 요구가 있고 일괄 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부서 집중조달 프로젝트에 편입시킨다.  **제4조** 정부조달법에서 집중조달이라 함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열거된 프로젝트를 집중조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부서 집중조달을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분할조달이라 함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되지 않은 한도액 기준 이상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조달하거나 조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5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성급,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급, 현급의 집중조달목록 및 조달한도액 기준을 별도로 확정할 수 있다.  **제조6** 국무원 재정부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정책에 근거하여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정책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달수요 기준 제정, 조달물량 유보, 가격평가 우대, 우선 조달 등 조치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후진지역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 지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가 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화물, 서비스를 조달함에 있어 입찰의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및 그 실시조례를 적용받으며; 기타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전 항에서 공사라 함은 건축물·구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이와 관련된 인테리어, 철거, 수선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를 지칭하고; 건설공사 관련 화물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불가분한 구성부분으로 공사의 기본 기능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설비, 재료 등을 지칭하며; 건설공사 관련 서비스라 함은 공사 완성에 필요로 하는 탐사, 설계, 감리 등 서비스를 지칭한다.  정부는 공사 및 공사 관련 화물, 서비스를 조달함에 있어 정부조달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매체에 발표하여야 한다. 조달 프로젝트의 예산금액이 국무원 재정부서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해당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조달인력 및 관련인력이 공급업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하여야 한다.   1.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전 3년 내에 공급업체와 노동관계가 존재했던 경우; 2.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전 3년 내에 공급업체의 이사·감사직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전 3년 내에 공급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지배인이었던 경우; 4. 공급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와 부부, 직계 혈족, 3대이내 방계 혈족 또는 근친·인친 관계인 경우; 5. 공급업체와 정부조달 활동의 공평성,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가 조달인력 및 관계인력이 기타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에 기피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제때에 기피신청을 당한 자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기피신청을 당한 자는 기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단일화 된 정부조달 전자거래 플랫폼 구축 표준을 시행하고 정보망을 이용한 정부조달 활동의 전산화를 촉진시킨다.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  **제11조** 조달자는 정부구매 활동 과정에서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여야 하고 공정·청렴과 신의성실을 다해야 하며 정부조달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고 정부조달 내부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절약을 철저히 샐행하여야 하고 조달수요를 과학적·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조달자는 증여품, 리베이트 또는 조달과 무관한 기타 상품, 서비스의 공여를 공급업체에 요구하거나 공급업체가 공여하는 증여품, 리베이트 또는 조달과 무관한 기타 상품, 서비스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정부조달법에서 조달대리기구라 함은 집중조달기구 및 집중조달기구 이외의 대리기구를 말한다.  집중조달기구는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사업법인으로 집중조달 프로젝트를 대리 수행하는 기구이다. 집중조달기구는 조달자가 위탁한 바에 따라 집중조달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수립하고 조달규칙을 확정하며 정부조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하고 집중조달 프로젝트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해서는 아니된다. 집중조달기구 이외의 조달대리기구는 조달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중개기구이다.  **제13조** 조달대리기구는 온전한 정부조달 내부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정부조달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평가·심사 조건과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조달대리기구는 조달수요 확정, 입찰문건·협상자료·가격문의통지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및 조달절차 최적화 등 전문 서비스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고 조달자가 위탁한 바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간내에 조달자와 낙찰 공급업체 또는 성약 공급업체와의 정부조달계약 체결을 성사시켜야 하며 적시에 조달자를 협조하여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조달대리기구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정부조달 대리업무를 수주하거나 조달자, 공급업체와 결탁하여 정부조달 활동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달대리기구의 업무인력은 조달자 또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식사 대접, 관광, 유흥 대접, 선물,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조달자 또는 공급업체에서 정산 및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 정책, 조달예산,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조달문건을 작성해야 한다.  조달수요는 법률·법규 및 정부조달 정책에 규정된 기술, 서비스, 안전 등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회대중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 조달수요 확정에 대한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기술의 복잡성 또는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요구사항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수요는 온전하고 명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수요 확정에 대한 관련 공급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16조** 정부조달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탁대리계약은 대리조달의 범위, 권한과 기한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달자와 조달대리기구는 위탁대리계약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조달대리기구는 대리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는 정부조달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영업집조 등 증명문서, 자연인의 신분증명; 2. 재무상황 보고서, 법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장자금 납부 관련서류; 3.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기술 능력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전 3년 내의 경영활동에서 중대한 법률위반 기록이 없음을 서약하는 성명문;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달 프로젝트가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황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서로 다른 공급업체가 동일한 자를 업체 책임자로 두고 있거나 직접적인 지배, 관리 관계에 있는 경우 동일 계약에 따른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일 공급원의 조달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조달 프로젝트를 위하여 총체적 설계, 규범 작성 또는 프로젝트 관리·감리·검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해당 조달 프로젝트의 기타 조달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정부조달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중대한 법률위반 기록이라 함은 공급업체가 불법경영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조업중단·휴업 명령, 허가증 또는 인가증 취소, 비교적 큰 액수의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을 지칭한다.  공급업체가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하기 전 3년 내에 불법경영으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 정부조달 활동 참여를 금지당하였고 금지기간이 만료된 후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업체를 멸시 또는 차별대우한 것에 속한다.   1. 동일 조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게 차별화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자격조건, 기술조건, 상업적인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조달 프로젝트의 구체 특성과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무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3. 조달수요의 기술, 서비스 등 요구사항이 특정 공급업체, 특정 제품을 지향하는 경우; 4. 특정 행정구역 또는 특정 분야의 실적·수상을 점수 가산 조건 또는 낙찰, 거래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5. 공급업체에 대해 차별적인 자격심사 기준 또는 평가·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6. 특정의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한정 또는 지정하는 경우; 7. 공급업체의 소유제 형태, 조직형태 또는 소재지를 불법으로 한정하는 경우; 8.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인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제21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가 공급업체에 대한 자격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자격 예비심사 실시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자격 예비심사를 실시한 경우 평가·심사 단계에서 공급업체 자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자격 예비심사를 통과한 공급업체가 평가·심사 단계에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조달자 및 조달대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 예비심사 실시 공고에는 조달자와 조달 프로젝트의 명칭, 조달수요, 공급업체 자격 요구사항 및 공급업체의 자격 예비심사 신청서류 제출 시간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 예비심사 신청서류 제출 시간은 공고 발표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5일(근무일 기준)이어야 한다.  **제22조** 공동체를 구성한 동일 유형 자격증을 보유한 공급업체들이 공동체의 업무분장에 따라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자격등급이 낮은 공급업체의 자격등급을 해당 공동체의 자격등급으로 인정한다.  공동체 형식으로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당사자는 단독 또는 기타 공급업체와 공동체를 구성하여 동일 계약에 따른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정부조달 방식**  **제23조** 조달자 공개입찰 액수 기준 이상의 화물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고 정부조달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거나 정부조달 정책 집행 등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법에 따라 공개입찰 이외의 기타 조달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4조**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프로젝트가 대규모 집중조달하기에 적합한 경우 대규모 집중조달하여 한다. 단 긴급한 소액·소량 화물 프로젝트와 특수 요구가 있는 서비스, 공사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법에 따라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는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경쟁적 협상 또는 단일 공급원 조달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부조달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한 상황은 조달자가 예견불가한 상황이거나 조달자의 지연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초래된 상황이어야 하고; 제4항에 규정한 상황은 예술품 조달 또는 특허·전문기술 또는 서비스의 시간, 수량에 대한 사전 확정 불가 등 사유로 인해 가격 총액을 사전에 산출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제27조** 정부조달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은 화물 또는 서비스에 대체불가한 특허·전문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공서비스 항목의 특수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어느 하나의 특정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제28조** 동일 재정연도 내에 조달자가 공개입찰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누차 조달한 동일 예산 항목하의 동일 품목 또는 동일 부류의 화물, 서비스 누계금액이 공고입찰 액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조달의 방식으로 공개입찰에 의한 조달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프로젝트 예산이 조정되었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공개입찰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조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정부조달 절차**  **제29조** 조달자는 집중조달목록, 조달 한도액 기준 및 승인을 득한 부서 예산에 근거하여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 및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0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입찰문건, 협상문서, 가격문의통지서에서 조달 프로젝트의 예산금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입찰문건의 제공기한은 입찰문건 발송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5일(근무일 기준)이어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이미 발송한 입찰문건에 대해 필요한 해석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해석 또는 수정 내용이 입찰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투찰 마감일 최소15일 이전에 서면형식으로 입찰문건을 취득한 모든 잠재적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5일에 맞출 수 없을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을 해당 일수만큼 미루어야 한다.  **제32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제정한 입찰문건 표준양식에 따라 입찰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문건에는 조달 프로젝트의 상업적 조건, 조달수요,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견적 요구사항, 입찰서 평가기준 및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 입찰문건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달 프로젝트 예산의 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입찰보증금은 수표·환어음· 약속어음 또는 금융기구, 담보기구가 발행한 보증서 등 비현찰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입찰문건의 요구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화 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낙찰통지서 발송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낙찰받지 못한 공급업체가 지급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정부조달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낙찰받은 공급업체가 지급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쟁적 협상 또는 가격문의 방식에 의한 조달에서 협상 참가자 또는 가격문의 통지 대상 공급업체에게 보증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전 두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4조** 정부조달 입찰평가 방법은 최저평가가격법과 종합평점법으로 구분된다.  최저평가가격법이라 함은 입찰서가 입찰문건의 모든 실질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킴과 더불어 견적가격이 가장 낮은 공급업체를 낙찰 후보로 선정하는 입찰평가 방법을 말한다. 종합평점법이라 함은 입찰서가 입찰문건의 모든 실질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킴과 더불어 평가·심사 요소의 계량화된 지표에 따른 평가·심사에서 최고점을 득한 공급업체를 낙찰 후보로 선정하는 입찰평가 방법을 말한다.  기술, 서비스 등 표준이 단일화된 화물과 서비스 조달 프로젝트는 최저평가가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종합평점법을 채택하는 경우 평가기준의 점수 설정은 평가·심사 요소의 계량화된 지표와 맞물려야 한다.  입찰문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입찰평가 기준을 평가·심사의 의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제35조** 협상문서에 조달수요를 온전하고 명확하에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급업체가 최종설계방안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협상이 끝난 후 협상 추진팀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통해 3개 이상 공급업체의 설계방안 또는 해결방안을 추천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3개 추천업체에게 규정된 시간 내에 최종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6조** 가격문의통지서에는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정부조달계약 조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가격문의 과정에서 가격문의팀은 가격문의통지서에서 확정한 정부조달계약 조항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정부조달법 제38조 제5항, 제40조 제4항에서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라 함은 공급업체가 제공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모두 조달문건에 규정된 실질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말한다.  **제38조** 공개입찰 액수 기준에 도달하였고 정부조달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유일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조달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정한 매채에 조달 프로젝트 정보 및 유일 공급업체의 명칭을 최소 5일(근무일 기준) 동안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국무원 재정부서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전문가를 무작위로 추출해야 한다.  **제40조**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는 평가 업무기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가서류, 평가상황 및 평가 과정에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이 평가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뇌물공여, 허위자료 제공 또는 공모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시에 재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는 평가 과정에 대한 불법 간섭을 받았을 경우 적시에 재정, 감찰 등 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 구성원은 객관성, 공정성, 신중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달문건에 규정한 평가절차,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달문건의 내용이 국가의 관련 강제성 규정에 위배될 경우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은 평가 업무를 중단하고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 구성원은 평가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본인의 평가 의견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평가보고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본인의 의견을 서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2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의 평가 전문가에게 편향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이나 설명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조달대리기구는 평가 마감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가보고서를 조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달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가보고서에서 추천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중에서 순서대로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를 확정해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낙찰·성약 공급업체 확정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낙찰·성약통지서를 발송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낙찰·성약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입찰문건, 경쟁적 협상문서, 가격문의통지서도 낙찰·성약결과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낙찰·성약 결과 공고 내용에는 조달자와 조달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연락처, 프로젝트 명칭과 프로젝트 번호,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의 명칭, 주소와 낙찰 또는 성약 금액, 주요 낙찰 또는 성약 목적물의 명칭, 규격, 수량, 단가, 서비스 요구사항 및 평가 전문가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 국무원 재정부서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재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달자, 조달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샘플 검사, 공급업체 고찰 등 방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계약에 규정한 기술, 서비스, 안전기준에 따라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검수확인서에는 각 항의 기술, 서비스, 안전 기준에 대한 이행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회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요청하여 검수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검수 결과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 정부조달법 제42조에 규정한 조달문건은 전자파일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조달계약**  **제47조** 국무원 재정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계약서 표준양식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8조** 조달문건에서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공급업체는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또는 금융기구, 담보기구가 발행한 보증서 등의 비현찰 형식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은 정부조달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가 조달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조달자는 평가보고서에서 추천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명단 순서대로 다음 후보자를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로 확정하거나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제50조** 조달자는 정부조달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매체에 정부조달계약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정부조달계약상의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51조** 조달자는 정부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날착 또는 성약 공급업체에게 조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자금 지급 절차는 국가의 관련 재정자금 지급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질의 및 신고**  **제52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3일(근무일 기준) 내에 공급업체가 제출한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공급업체의 질문사항 또는 질의사항이 조달자가 조달대리기구에 위임한 권한 범위를 초월하였을 경우 조달대리기구는 공급업체에게 해당 질문사항 또는 질의사항을 조달자에게 제기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는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를 협조하여 공급업체가 제기한 질문과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53조** 정부조달법 제52조에 규정한 공급업체가 그의 권익이 침해당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질의 가능한 조달문건에 대한 질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달문건 접수일 또는 조달문건 공고기한 만료일을 말한다. 2. 조달 과정에 대한 질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달 절차 각 단계의 마감일을 말한다. 3. 낙찰 또는 성약 결과에 대한 질의를 제기하는 경우 낙찰 또는 성약 결과 고공기한 만료일을 말한다.   **제54조** 질문사항 또는 질의사항이 낙찰·성약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달자는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고 계약을 이미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55조** 공급업체가 질의, 신고는 명확한 청구사항과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공급업체의 신고사항은 이미 제기한 질의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재정부서는 서면심사 방식으로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또는 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인 및 신고사항과 관련된 당사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신고인이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자료 제공하였거나 불법 수단으로 확보한 증명자료에 근거하여 신고한 경우 재정부서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재정부서가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인이 서면으로 신고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재정부서는 신고 처리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58조** 재정부서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검사, 검측, 감정, 전문가 평가 및 신고인의 자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고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재정부서의 신고사항 처리결정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과 검사**  **제59조** 정부조달법 제63조에서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조달기준이라 함은 프로젝트 조달 시 근거로 하는 경비예산 기준, 자산배치 기준과 기술·서비스 기준 등을 말한다.  **제60조** 정부조달법 제66조에 규정한 평가사항 이외에 재정부서가 집중조달기구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도 포함된다.   1. 정부조달 정책의 집행 상황; 2. 조달문건의 작성 수준; 3. 조달 방식 및 조달 절차 집행 상황; 4. 질문·질의사항에 답변 상황; 5. 내부 감독관리제도의 수립 및 집행 상황; 6.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재정부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조달기구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중요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조달자가 조달대리기구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조달자는 조달대리기구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달대리기구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조달자는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달대리기구가 조달자의 조달 요구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업체를 멸시, 차별대우 하거나 기타 법률·법규와 정부조달정책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함을 발견하였거나 조달자에게 기타 불법행위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조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조달대리기구는 조달자의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성부서는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제정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 활동 과정에서의 평가 전문가의 직책 이행 상황을 기록하고 적시에 재정부서에 보고 해야 한다.  **제63조** 각 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와 기타 관계 부서는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한 공급업체, 조달대리기구, 평가 전문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불량행위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통일적인 신용정보 플랫폼에 편입해야 한다.  **제64조** 각 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 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직과 인원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 감사기관, 감찰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조달 당사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재정부서에 통보하야여 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66조** 정부조달법 제71조에 규정한 과태료의 액수는 10만위안 이하로 한다.  정부조달법 제72조에 규정한 과태료의 액수는 5만위안 이상 25만위안 이하로 한다.  **제67조** 조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고 처분 사실을 통보한다.   1.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실시계획을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비안(備案)하지 아니한 경우; 2. 분할 조달 또는 기타 임의의 방식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의 공개입찰을 회피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이 추천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중에서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조달문건에 확정한 사항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부조달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한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물자, 공사 또는 서비스 조달금액이 기존 계약에 정한 조달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6. 일방적으로 정부조달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행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 7.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8. 규정된 시간 내에 정부조달계약의 부본을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와 관련 부서에 비안(備案)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조달법 제71조,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1. 정부조달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에 따라 지정 매체에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정책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조례 제15조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거나 국가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법에 따라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전문가를 추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조달 평가·심사 활동을 불법으로 간섭한 경우; 7. 종합평점법 채택 시 평가·심사 기준의 점수 설정이 평가·심사 요소의 계량화된 지표와 맞물리지 아니한 경우; 8. 규정된 기한 내에 공급업체의 질문, 질의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샘플 검사, 공급업체 고찰 등 방식으로 평가·심사 결과를 변경한 경우;   (10)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 집중조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불법소득이 있을 시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고 처분 사실을 통보한다.   1. 내부 감독관리제도가 완비하지 못하였고 법에 따라 분설, 분리해야는 직위, 인력을 분설,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집중조달 프로젝를 기타 조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 3. 영리성 활동을 취급한 경우.   **제70조**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달인력이 법에 따라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부서는 경고처분을 내리고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1조** 정부조달법 제71조, 제72조에 규정한 불법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 낙찰 또는 성약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낙찰 또는 성약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정부조달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실시한다. 2.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가 학정되었으나 정부조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낙찰 또는 성약 결과를 무효화 시키고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중에서 별도의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실시한다. 3. 정부조달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중에서 별도의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실시한다. 4. 정부조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조달자, 공급업체에게 손실이 초래되었을 경우 책임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부조달 당사자가 정부조달법 또는 이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를 행하였고 해당 행위의 시정 후에도 여전히 낙찰, 성약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법에 따라 낙찰, 성약 결과가 무효화 되었을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2조** 공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정부조달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1.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 구성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기타 부정당 이익을 제공한 경우; 2. 낙찰 또는 성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달자와의 정부조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3. 조달문건에 확정한 사항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부조달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5. 위조품·불량품을 공급한 경우; 6. 일방적으로 정부조달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행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   공급업체가 전 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낙찰, 성약은 무효화 된다. 평가·심사 단계에서 공급업체의 자격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자와 조달대리기구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조달금액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량행위 기록부에 기록하며 낙찰, 성약은 무효화 처리된다.  **제73조** 공급업체가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불법수단으로 증명자료를 학보하여 신고를 한 경우 재정부서는 불량행위 기록부에 기록하고 1~3년간 정부조달 활동 참여 금지 처벌을 내린다.  **제7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악의적인 공모에 해당되며 정부조달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의 법률책임을 추궁하고 정부조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조달자, 조달대리기구 및 그 업무인력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1. 공급업체가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보한 기타 공급업체의 관련 상황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찰서류 또는 응찰서류를 수정한 경우; 2. 공급업체가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가 지시한 바에 따라 입찰서류 또는 응찰서류를 교체하거나 수정한 경우; 3. 공급업체 간에 견적, 기술방안 등 입찰서류 또는 응찰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협상한 경우; 4. 동일 그룹, 협회, 상회 등 조직의 구성원에 속하는 공급업체들이 해당 조직의 요구하에 협동하여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한 경우; 5. 공급업체 간에 어느 특정 공급업체의 낙찰, 성약을 성사시키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6. 공급업체들 간에 일부 공급업체의 정부조달 활동 참여 포기 또는 낙찰, 성약포기에 대해 합의한 경우; 7. 공급업체와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 간에 또는 공급업체 간에 특정 공급업체의 낙찰, 성약을 성사시키거나 기타 공급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기타 공모 행위를 행한 경우.   **제70조**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가 조달문건에 규정한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평가문건, 평가상황을 유출시킨 경우 재정부서는 경고 처벌을 내리고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낙찰, 성약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조달 평가 활동 참여 금지를 명한다.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가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부조달 평가 활동 참여 금지를 명한다.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가 조달자, 조달대리기구,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부조달 평가 활동 참여 금지를 명한다.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가 상기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그의 평가 의견은 무효화 처리되고 평가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76조** 정부조달 당사자가 정부조달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77조** 재정부서가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리직책 이행 중에 정부조달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고;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가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칙**  **제78조** 성에서 직접 재정관리를 실시하는 성의 현급 인민정부는 수요에 근거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산하에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의 조달 방식 변경 승인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9조**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实施条例**  国务院令第658号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已经2014年12月31日国务院第75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5年1月30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以下简称政府采购法），制定本条例。  **第二条**　政府采购法第二条所称财政性资金是指纳入预算管理的资金。  　　以财政性资金作为还款来源的借贷资金，视同财政性资金。  　　国家机关、事业单位和团体组织的采购项目既使用财政性资金又使用非财政性资金的，使用财政性资金采购的部分，适用政府采购法及本条例；财政性资金与非财政性资金无法分割采购的，统一适用政府采购法及本条例。  　　政府采购法第二条所称服务，包括政府自身需要的服务和政府向社会公众提供的公共服务。  **第三条**　集中采购目录包括集中采购机构采购项目和部门集中采购项目。  　　技术、服务等标准统一，采购人普遍使用的项目，列为集中采购机构采购项目；采购人本部门、本系统基于业务需要有特殊要求，可以统一采购的项目，列为部门集中采购项目。  **第四条**　政府采购法所称集中采购，是指采购人将列入集中采购目录的项目委托集中采购机构代理采购或者进行部门集中采购的行为；所称分散采购，是指采购人将采购限额标准以上的未列入集中采购目录的项目自行采购或者委托采购代理机构代理采购的行为。  **第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机构根据实际情况，可以确定分别适用于本行政区域省级、设区的市级、县级的集中采购目录和采购限额标准。  **第六条**　国务院财政部门应当根据国家的经济和社会发展政策，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政府采购政策，通过制定采购需求标准、预留采购份额、价格评审优惠、优先采购等措施，实现节约能源、保护环境、扶持不发达地区和少数民族地区、促进中小企业发展等目标。  **第七条**　政府采购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采用招标方式采购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及其实施条例；采用其他方式采购的，适用政府采购法及本条例。  　　前款所称工程，是指建设工程，包括建筑物和构筑物的新建、改建、扩建及其相关的装修、拆除、修缮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是指构成工程不可分割的组成部分，且为实现工程基本功能所必需的设备、材料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服务，是指为完成工程所需的勘察、设计、监理等服务。  　　政府采购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应当执行政府采购政策。  **第八条**　政府采购项目信息应当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发布。采购项目预算金额达到国务院财政部门规定标准的，政府采购项目信息应当在国务院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发布。  **第九条**　在政府采购活动中，采购人员及相关人员与供应商有下列利害关系之一的，应当回避：  　　（一）参加采购活动前3年内与供应商存在劳动关系；  　　（二）参加采购活动前3年内担任供应商的董事、监事；  　　（三）参加采购活动前3年内是供应商的控股股东或者实际控制人；  　　（四）与供应商的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有夫妻、直系血亲、三代以内旁系血亲或者近姻亲关系；  　　（五）与供应商有其他可能影响政府采购活动公平、公正进行的关系。  　　供应商认为采购人员及相关人员与其他供应商有利害关系的，可以向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书面提出回避申请，并说明理由。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及时询问被申请回避人员，有利害关系的被申请回避人员应当回避。  **第十条**　国家实行统一的政府采购电子交易平台建设标准，推动利用信息网络进行电子化政府采购活动。  **第二章　政府采购当事人**  **第十一条**　采购人在政府采购活动中应当维护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公正廉洁，诚实守信，执行政府采购政策，建立政府采购内部管理制度，厉行节约，科学合理确定采购需求。  　　采购人不得向供应商索要或者接受其给予的赠品、回扣或者与采购无关的其他商品、服务。  **第十二条**　政府采购法所称采购代理机构，是指集中采购机构和集中采购机构以外的采购代理机构。  　　集中采购机构是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依法设立的非营利事业法人，是代理集中采购项目的执行机构。集中采购机构应当根据采购人委托制定集中采购项目的实施方案，明确采购规程，组织政府采购活动，不得将集中采购项目转委托。集中采购机构以外的采购代理机构，是从事采购代理业务的社会中介机构。  **第十三条**　采购代理机构应当建立完善的政府采购内部监督管理制度，具备开展政府采购业务所需的评审条件和设施。  　　采购代理机构应当提高确定采购需求，编制招标文件、谈判文件、询价通知书，拟订合同文本和优化采购程序的专业化服务水平，根据采购人委托在规定的时间内及时组织采购人与中标或者成交供应商签订政府采购合同，及时协助采购人对采购项目进行验收。  **第十四条**　采购代理机构不得以不正当手段获取政府采购代理业务，不得与采购人、供应商恶意串通操纵政府采购活动。  　　采购代理机构工作人员不得接受采购人或者供应商组织的宴请、旅游、娱乐，不得收受礼品、现金、有价证券等，不得向采购人或者供应商报销应当由个人承担的费用。  **第十五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应当根据政府采购政策、采购预算、采购需求编制采购文件。  　　采购需求应当符合法律法规以及政府采购政策规定的技术、服务、安全等要求。政府向社会公众提供的公共服务项目，应当就确定采购需求征求社会公众的意见。除因技术复杂或者性质特殊，不能确定详细规格或者具体要求外，采购需求应当完整、明确。必要时，应当就确定采购需求征求相关供应商、专家的意见。  **第十六条**　政府采购法第二十条规定的委托代理协议，应当明确代理采购的范围、权限和期限等具体事项。  　　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委托代理协议履行各自义务，采购代理机构不得超越代理权限。  **第十七条**　参加政府采购活动的供应商应当具备政府采购法第二十二条第一款规定的条件，提供下列材料：  　　（一）法人或者其他组织的营业执照等证明文件，自然人的身份证明；  　　（二）财务状况报告，依法缴纳税收和社会保障资金的相关材料；  　　（三）具备履行合同所必需的设备和专业技术能力的证明材料；  　　（四）参加政府采购活动前3年内在经营活动中没有重大违法记录的书面声明；  　　（五）具备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的证明材料。  　　采购项目有特殊要求的，供应商还应当提供其符合特殊要求的证明材料或者情况说明。  **第十八条**　单位负责人为同一人或者存在直接控股、管理关系的不同供应商，不得参加同一合同项下的政府采购活动。  　　除单一来源采购项目外，为采购项目提供整体设计、规范编制或者项目管理、监理、检测等服务的供应商，不得再参加该采购项目的其他采购活动。  **第十九条**　政府采购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五项所称重大违法记录，是指供应商因违法经营受到刑事处罚或者责令停产停业、吊销许可证或者执照、较大数额罚款等行政处罚。  　　供应商在参加政府采购活动前3年内因违法经营被禁止在一定期限内参加政府采购活动，期限届满的，可以参加政府采购活动。  **第二十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以不合理的条件对供应商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  　　（一）就同一采购项目向供应商提供有差别的项目信息；  　　（二）设定的资格、技术、商务条件与采购项目的具体特点和实际需要不相适应或者与合同履行无关；  　　（三）采购需求中的技术、服务等要求指向特定供应商、特定产品；  　　（四）以特定行政区域或者特定行业的业绩、奖项作为加分条件或者中标、成交条件；  　　（五）对供应商采取不同的资格审查或者评审标准；  　　（六）限定或者指定特定的专利、商标、品牌或者供应商；  　　（七）非法限定供应商的所有制形式、组织形式或者所在地；  　　（八）以其他不合理条件限制或者排斥潜在供应商。  **第二十一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对供应商进行资格预审的，资格预审公告应当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发布。已进行资格预审的，评审阶段可以不再对供应商资格进行审查。资格预审合格的供应商在评审阶段资格发生变化的，应当通知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  　　资格预审公告应当包括采购人和采购项目名称、采购需求、对供应商的资格要求以及供应商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和地点。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自公告发布之日起不得少于5个工作日。  **第二十二条**　联合体中有同类资质的供应商按照联合体分工承担相同工作的，应当按照资质等级较低的供应商确定资质等级。  　　以联合体形式参加政府采购活动的，联合体各方不得再单独参加或者与其他供应商另外组成联合体参加同一合同项下的政府采购活动。  **第三章　政府采购方式**  **第二十三条**　采购人采购公开招标数额标准以上的货物或者服务，符合政府采购法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情形或者有需要执行政府采购政策等特殊情况的，经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批准，可以依法采用公开招标以外的采购方式。  **第二十四条**　列入集中采购目录的项目，适合实行批量集中采购的，应当实行批量集中采购，但紧急的小额零星货物项目和有特殊要求的服务、工程项目除外。  **第二十五条**　政府采购工程依法不进行招标的，应当依照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的竞争性谈判或者单一来源采购方式采购。  **第二十六条**　政府采购法第三十条第三项规定的情形，应当是采购人不可预见的或者非因采购人拖延导致的；第四项规定的情形，是指因采购艺术品或者因专利、专有技术或者因服务的时间、数量事先不能确定等导致不能事先计算出价格总额。  **第二十七条**　政府采购法第三十一条第一项规定的情形，是指因货物或者服务使用不可替代的专利、专有技术，或者公共服务项目具有特殊要求，导致只能从某一特定供应商处采购。  **第二十八条**　在一个财政年度内，采购人将一个预算项目下的同一品目或者类别的货物、服务采用公开招标以外的方式多次采购，累计资金数额超过公开招标数额标准的，属于以化整为零方式规避公开招标，但项目预算调整或者经批准采用公开招标以外方式采购除外。  **第四章　政府采购程序**  **第二十九条**　采购人应当根据集中采购目录、采购限额标准和已批复的部门预算编制政府采购实施计划，报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备案。  **第三十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招标文件、谈判文件、询价通知书中公开采购项目预算金额。  **第三十一条**　招标文件的提供期限自招标文件开始发出之日起不得少于5个工作日。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可以对已发出的招标文件进行必要的澄清或者修改。澄清或者修改的内容可能影响投标文件编制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投标截止时间至少15日前，以书面形式通知所有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不足15日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顺延提交投标文件的截止时间。  **第三十二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国务院财政部门制定的招标文件标准文本编制招标文件。  　　招标文件应当包括采购项目的商务条件、采购需求、投标人的资格条件、投标报价要求、评标方法、评标标准以及拟签订的合同文本等。  **第三十三条**　招标文件要求投标人提交投标保证金的，投标保证金不得超过采购项目预算金额的2%。投标保证金应当以支票、汇票、本票或者金融机构、担保机构出具的保函等非现金形式提交。投标人未按照招标文件要求提交投标保证金的，投标无效。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自中标通知书发出之日起5个工作日内退还未中标供应商的投标保证金，自政府采购合同签订之日起5个工作日内退还中标供应商的投标保证金。  　　竞争性谈判或者询价采购中要求参加谈判或者询价的供应商提交保证金的，参照前两款的规定执行。  **第三十四条**　政府采购招标评标方法分为最低评标价法和综合评分法。  　　最低评标价法，是指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投标报价最低的供应商为中标候选人的评标方法。综合评分法，是指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按照评审因素的量化指标评审得分最高的供应商为中标候选人的评标方法。  　　技术、服务等标准统一的货物和服务项目，应当采用最低评标价法。  　　采用综合评分法的，评审标准中的分值设置应当与评审因素的量化指标相对应。  　　招标文件中没有规定的评标标准不得作为评审的依据。  **第三十五条**　谈判文件不能完整、明确列明采购需求，需要由供应商提供最终设计方案或者解决方案的，在谈判结束后，谈判小组应当按照少数服从多数的原则投票推荐3家以上供应商的设计方案或者解决方案，并要求其在规定时间内提交最后报价。  **第三十六条**　询价通知书应当根据采购需求确定政府采购合同条款。在询价过程中，询价小组不得改变询价通知书所确定的政府采购合同条款。  **第三十七条**　政府采购法第三十八条第五项、第四十条第四项所称质量和服务相等，是指供应商提供的产品质量和服务均能满足采购文件规定的实质性要求。  **第三十八条**　达到公开招标数额标准，符合政府采购法第三十一条第一项规定情形，只能从唯一供应商处采购的，采购人应当将采购项目信息和唯一供应商名称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示，公示期不得少于5个工作日。  **第三十九条**　除国务院财政部门规定的情形外，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从政府采购评审专家库中随机抽取评审专家。  **第四十条**　政府采购评审专家应当遵守评审工作纪律，不得泄露评审文件、评审情况和评审中获悉的商业秘密。  　　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在评审过程中发现供应商有行贿、提供虚假材料或者串通等违法行为的，应当及时向财政部门报告。  　　政府采购评审专家在评审过程中受到非法干预的，应当及时向财政、监察等部门举报。  **第四十一条**　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成员应当按照客观、公正、审慎的原则，根据采购文件规定的评审程序、评审方法和评审标准进行独立评审。采购文件内容违反国家有关强制性规定的，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应当停止评审并向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说明情况。  　　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成员应当在评审报告上签字，对自己的评审意见承担法律责任。对评审报告有异议的，应当在评审报告上签署不同意见，并说明理由，否则视为同意评审报告。  **第四十二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不得向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的评审专家作倾向性、误导性的解释或者说明。  **第四十三条**　采购代理机构应当自评审结束之日起2个工作日内将评审报告送交采购人。采购人应当自收到评审报告之日起5个工作日内在评审报告推荐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按顺序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自中标、成交供应商确定之日起2个工作日内，发出中标、成交通知书，并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中标、成交结果，招标文件、竞争性谈判文件、询价通知书随中标、成交结果同时公告。  　　中标、成交结果公告内容应当包括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的名称、地址、联系方式，项目名称和项目编号，中标或者成交供应商名称、地址和中标或者成交金额，主要中标或者成交标的的名称、规格型号、数量、单价、服务要求以及评审专家名单。  **第四十四条**　除国务院财政部门规定的情形外，采购人、采购代理机构不得以任何理由组织重新评审。采购人、采购代理机构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组织重新评审的，应当书面报告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不得通过对样品进行检测、对供应商进行考察等方式改变评审结果。  **第四十五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政府采购合同规定的技术、服务、安全标准组织对供应商履约情况进行验收，并出具验收书。验收书应当包括每一项技术、服务、安全标准的履约情况。  　　政府向社会公众提供的公共服务项目，验收时应当邀请服务对象参与并出具意见，验收结果应当向社会公告。  **第四十六条**　政府采购法第四十二条规定的采购文件，可以用电子档案方式保存。  **第五章　政府采购合同**  **第四十七条**　国务院财政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政府采购合同标准文本。  **第四十八条**　采购文件要求中标或者成交供应商提交履约保证金的，供应商应当以支票、汇票、本票或者金融机构、担保机构出具的保函等非现金形式提交。履约保证金的数额不得超过政府采购合同金额的10%。  **第四十九条**　中标或者成交供应商拒绝与采购人签订合同的，采购人可以按照评审报告推荐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名单排序，确定下一候选人为中标或者成交供应商，也可以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第五十条**　采购人应当自政府采购合同签订之日起2个工作日内，将政府采购合同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但政府采购合同中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的内容除外。  **第五十一条**　采购人应当按照政府采购合同规定，及时向中标或者成交供应商支付采购资金。  　　政府采购项目资金支付程序，按照国家有关财政资金支付管理的规定执行。  **第六章　质疑与投诉**  **第五十二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3个工作日内对供应商依法提出的询问作出答复。  　　供应商提出的询问或者质疑超出采购人对采购代理机构委托授权范围的，采购代理机构应当告知供应商向采购人提出。  　　政府采购评审专家应当配合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答复供应商的询问和质疑。  **第五十三条**　政府采购法第五十二条规定的供应商应知其权益受到损害之日，是指：  　　（一）对可以质疑的采购文件提出质疑的，为收到采购文件之日或者采购文件公告期限届满之日；  　　（二）对采购过程提出质疑的，为各采购程序环节结束之日；  　　（三）对中标或者成交结果提出质疑的，为中标或者成交结果公告期限届满之日。  **第五十四条**　询问或者质疑事项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的，采购人应当暂停签订合同，已经签订合同的，应当中止履行合同。  **第五十五条**　供应商质疑、投诉应当有明确的请求和必要的证明材料。供应商投诉的事项不得超出已质疑事项的范围。  **第五十六条**　财政部门处理投诉事项采用书面审查的方式，必要时可以进行调查取证或者组织质证。  　　对财政部门依法进行的调查取证，投诉人和与投诉事项有关的当事人应当如实反映情况，并提供相关材料。  **第五十七条**　投诉人捏造事实、提供虚假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的，财政部门应当予以驳回。  　　财政部门受理投诉后，投诉人书面申请撤回投诉的，财政部门应当终止投诉处理程序。  **第五十八条**　财政部门处理投诉事项，需要检验、检测、鉴定、专家评审以及需要投诉人补正材料的，所需时间不计算在投诉处理期限内。  　　财政部门对投诉事项作出的处理决定，应当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  **第七章　监督检查**  **第五十九条**政府采购法第六十三条所称政府采购项目的采购标准，是指项目采购所依据的经费预算标准、资产配置标准和技术、服务标准等。  **第六十条**　除政府采购法第六十六条规定的考核事项外，财政部门对集中采购机构的考核事项还包括：  　　（一）政府采购政策的执行情况；  （二）采购文件编制水平；  （三）采购方式和采购程序的执行情况；  　　（四）询问、质疑答复情况；  　　（五）内部监督管理制度建设及执行情况；  　　（六）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规定的其他事项。  　　财政部门应当制定考核计划，定期对集中采购机构进行考核，考核结果有重要情况的，应当向本级人民政府报告。  **第六十一条**　采购人发现采购代理机构有违法行为的，应当要求其改正。采购代理机构拒不改正的，采购人应当向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报告，财政部门应当依法处理。  　　采购代理机构发现采购人的采购需求存在以不合理条件对供应商实行差别待遇、歧视待遇或者其他不符合法律、法规和政府采购政策规定内容，或者发现采购人有其他违法行为的，应当建议其改正。采购人拒不改正的，采购代理机构应当向采购人的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报告，财政部门应当依法处理。  **第六十二条**　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对政府采购评审专家库实行动态管理，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制定。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对评审专家在政府采购活动中的职责履行情况予以记录，并及时向财政部门报告。  **第六十三条**　各级人民政府财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参加政府采购活动的供应商、采购代理机构、评审专家的监督管理，对其不良行为予以记录，并纳入统一的信用信息平台。  **第六十四条**　各级人民政府财政部门对政府采购活动进行监督检查，有权查阅、复制有关文件、资料，相关单位和人员应当予以配合。  **第六十五条**　审计机关、监察机关以及其他有关部门依法对政府采购活动实施监督，发现采购当事人有违法行为的，应当及时通报财政部门。  **第八章　法律责任**  **第六十六条**　政府采购法第七十一条规定的罚款，数额为10万元以下。  　　政府采购法第七十二条规定的罚款，数额为5万元以上25万元以下。  **第六十七条**　采购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并予以通报：  　　（一）未按照规定编制政府采购实施计划或者未按照规定将政府采购实施计划报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备案；  　　（二）将应当进行公开招标的项目化整为零或者以其他任何方式规避公开招标；  　　（三）未按照规定在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推荐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  　　（四）未按照采购文件确定的事项签订政府采购合同；  　　（五）政府采购合同履行中追加与合同标的相同的货物、工程或者服务的采购金额超过原合同采购金额10%；  　　（六）擅自变更、中止或者终止政府采购合同；  　　（七）未按照规定公告政府采购合同；  　　（八）未按照规定时间将政府采购合同副本报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和有关部门备案。  **第六十八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一条、第七十八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一）未依照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的方式实施采购；  　　（二）未依法在指定的媒体上发布政府采购项目信息；  　　（三）未按照规定执行政府采购政策；  　　（四）违反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导致无法组织对供应商履约情况进行验收或者国家财产遭受损失；  　　（五）未依法从政府采购评审专家库中抽取评审专家；  　　（六）非法干预采购评审活动；  　　（七）采用综合评分法时评审标准中的分值设置未与评审因素的量化指标相对应；  　　（八）对供应商的询问、质疑逾期未作处理；  　　（九）通过对样品进行检测、对供应商进行考察等方式改变评审结果；  　　（十）未按照规定组织对供应商履约情况进行验收。  **第六十九条**　集中采购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并予以通报：  　　（一）内部监督管理制度不健全，对依法应当分设、分离的岗位、人员未分设、分离；  　　（二）将集中采购项目委托其他采购代理机构采购；  　　（三）从事营利活动。  **第七十条**　采购人员与供应商有利害关系而不依法回避的，由财政部门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一条**　有政府采购法第七十一条、第七十二条规定的违法行为之一，影响或者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的，依照下列规定处理：  　　（一）未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的，终止本次政府采购活动，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二）已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但尚未签订政府采购合同的，中标或者成交结果无效，从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另行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没有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的，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三）政府采购合同已签订但尚未履行的，撤销合同，从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另行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没有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的，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四）政府采购合同已经履行，给采购人、供应商造成损失的，由责任人承担赔偿责任。  　　政府采购当事人有其他违反政府采购法或者本条例规定的行为，经改正后仍然影响或者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或者依法被认定为中标、成交无效的，依照前款规定处理。  **第七十二条**　供应商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七条第一款的规定追究法律责任：  　　（一）向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成员行贿或者提供其他不正当利益；  　　（二）中标或者成交后无正当理由拒不与采购人签订政府采购合同；  　　（三）未按照采购文件确定的事项签订政府采购合同；  　　（四）将政府采购合同转包；  　　（五）提供假冒伪劣产品；  　　（六）擅自变更、中止或者终止政府采购合同。  　　供应商有前款第一项规定情形的，中标、成交无效。评审阶段资格发生变化，供应商未依照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通知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的，处以采购金额5‰的罚款，列入不良行为记录名单，中标、成交无效。  **第七十三条**　供应商捏造事实、提供虚假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的，由财政部门列入不良行为记录名单，禁止其1至3年内参加政府采购活动。  **第七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恶意串通，对供应商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七条第一款的规定追究法律责任，对采购人、采购代理机构及其工作人员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二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一）供应商直接或者间接从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处获得其他供应商的相关情况并修改其投标文件或者响应文件；  　　（二）供应商按照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的授意撤换、修改投标文件或者响应文件；  　　（三）供应商之间协商报价、技术方案等投标文件或者响应文件的实质性内容；  　　（四）属于同一集团、协会、商会等组织成员的供应商按照该组织要求协同参加政府采购活动；  　　（五）供应商之间事先约定由某一特定供应商中标、成交；  　　（六）供应商之间商定部分供应商放弃参加政府采购活动或者放弃中标、成交；  　　（七）供应商与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之间、供应商相互之间，为谋求特定供应商中标、成交或者排斥其他供应商的其他串通行为。  **第七十五条**　政府采购评审专家未按照采购文件规定的评审程序、评审方法和评审标准进行独立评审或者泄露评审文件、评审情况的，由财政部门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影响中标、成交结果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禁止其参加政府采购评审活动。  　　政府采购评审专家与供应商存在利害关系未回避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禁止其参加政府采购评审活动。  　　政府采购评审专家收受采购人、采购代理机构、供应商贿赂或者获取其他不正当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禁止其参加政府采购评审活动。  　　政府采购评审专家有上述违法行为的，其评审意见无效，不得获取评审费；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七十六条**　政府采购当事人违反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七十七条**　财政部门在履行政府采购监督管理职责中违反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九章　附　则**  **第七十八条**　财政管理实行省直接管理的县级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并报经省级人民政府批准，行使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批准变更采购方式的职权。  **第七十九条**　本条例自2015年3月1日起施行。 |